

##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1교시	민사소송법	120분		

### 【 A-1 】 (30점)

형제인 乙, 丙, 丁은 부친 A가 소유하고 있던 X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X토지에 인접한 Y토지를 B로부터 매수한 甲이 Y토지를 측량한 결과, X토지로 인해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甲은 X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乙, 丙, 丁을 상대로 토지경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1) 이 소의 종류는? (10점)
- (2) 이 공동소송의 유형은? (10점)
- (3) 이 소송 중 소외 戊가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A의 혼인 외의 자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경우 戊가 당사자로 되기 위한 방법은? (10점)

### 【 A-2 】 (20점)

오지여행을 취미로 하던 乙은 아프리카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자금이 부족하자 선배인 甲에게서 금 1,000만원을 빌렸다. (각 문제는 별개로 봄)

- (1) 乙이 그 여행을 다녀온 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며 갚을 생각도 하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乙에게 소장과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우편집배원이 乙의 주소지에 갔으나 만나지 못해 우체국창구에서 찾아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문을 남겼다. 이를 본 乙의 동거자 丙이 우체국창구에 찾아오자 당해 서류를 丙에게 교부하였다. 이것은 적법한가? (10점)

- (2) 서울에 사는 甲이 乙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乙에 대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법원의 명령을 받아 공시송달하였고, 그 결과 乙은 변론에 출석하지 못하여 甲은 승소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몇 달 후 乙이 1년간의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온 후 甲이 자신에 대해 소송을 서울에서 제기하였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로 하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경우 귀책사유 없는 피고 乙에 대한 구제방법은? (10점)

【 B-1 】 (30점)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지방자치단체)이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이 토지를 1987.3.17.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다. 乙의 항변에 대하여 甲은 당초 乙의 점유개시시기를 乙의 주장과 같이 1987.3.17.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2006.1.경부터 점유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 (1) 변론주의에서 말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20점)

- (2)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한 甲의 위의 주장 사실은 어떤 사실인가? (10점)

【 B-2 】 (20점)

甲은 乙이 운전하는 차에 치어 중상을 입어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甲의 주장을 부인하자 甲은 그 사건을 목격한 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증인신문에서 丙은 자신이 2011.5.30. 오후 2시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에 乙의 승용차가 甲을 치어서 길바닥에 쓰러뜨렸고, 乙이 차에서 내려 약 1분동안 甲을 살펴보는 것을 목격하였지요?”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丙은 “네”라고만 대답하였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진술을 얻어내는 이러한 신문은 적절한가? (10점)

- (1) 위에서 원고 甲이 丙을 신문하면서 “증인이 2011.5.30. 오후 2시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에 乙의 승용차가 甲을 치어서 길바닥에 쓰러뜨렸고, 乙이 차에서 내려 약 1분동안 甲을 살펴보는 것을 목격하였지요?”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丙은 “네”라고만 대답하였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진술을 얻어내는 이러한 신문은 적절한가? (10점)

- (2) 만일 위 소송에서 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10점)

